

2025년 오션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기술 기반의 경쟁력있는 해양수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「오션테크 스타트업 챌린지」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** 혁신기술 기반의 해양수산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체질 강화
- 지원규모:** 총 4개사* 내외, 총 2억원(기업당 사업화 자금 5천만원)
*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, 해양수산 R&D 우수성과 이전·실시기업 우대
- 사업기간:** 협약체결일~ 2025.11.
- 지원내용:** 지식재산(IP) 및 R&D 우수성과 기반의 기술(제품)을 개발·사업화 하고자하는 청년 스타트업 자금지원
 - 기술이전 및 적용 제품의 상용화, 시장진출을 위한 신뢰성 검증, 인증 획득, 테스트베드 구축, 기타 기술사업화 관련 제반비용 등

구분	지원내용	비고
시제품 제작	○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	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선정 후 안내
연구개발	○ 시장조사, 기술개발 등	
제품 검증	○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	
기업 홍보	○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	
박람회 참가	○ 국내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	

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- 신청자격**
 - 해양수산 분야 청년 창업자, 창업 7년 이내 기업
 - *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자(대표자)가 만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함
 - ** 접수 마감일 기준,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(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)

- 접수 마감일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'사업을 개시한 날'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- 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- 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[첨부1]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
- 공동대표 구성된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□ 제외 대상

-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*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65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를 기준으로 함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3 신청방법

- **신청기간:** 2025. 1. 23.(목)~2. 21.(금) 17:00까지
- **신청방법:** 상생누리(www.winwinnuri.or.kr) 동반성장 프로그램 메뉴를 통한 접수

※ 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권고

※ 상생누리 접속 → 프로그램 검색 메뉴에서 모집공고 검색 및 “신청” → 기본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→ “제출”

□ 신청서류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사업계획서(직인 날인 필수)	첨부1
②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-
③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첨부2
④	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	-
⑤	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동의서	첨부3, 4
⑥	최근 3개년도('22~'24) 재무제표	
⑦	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서류 등	해당 시 제출

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4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

- 사전검토, 서면평가,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
 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
 - 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 - *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)
 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2배수) 선정
 - *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
 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<서류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■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	20
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	30
시장성 및 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 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* (수출기업의 경우) 수출국가, 전시회/전시시장의 특성과 아이템과의 적합도 	40
사업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	10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발표평가(최종 선정평가)에서 가점 부여

가점 항목	제출서류(필수)	가점 규모
◦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(21~'24)	예비오션스타 인증서	3점
◦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	신기술 인증서	
◦ 해양수산 우수기술 이전지원 사업 기술거래 기업	기술거래 확인서	
◦ 해양수산 수요기술 이전지원 사업 기술거래 기업	기술거래 확인서	
◦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재 기업	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서	

□ 사업 추진절차

구분	시행주체	세부내용
기업선정 (2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 (평가위원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 사전검토, 서류평가, 발표평가, 운영위원회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
↓		
결과통보 및 협약 (2월 말~3월 초)	전담기관 수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선정 결과 통보 • 협약 체결 및 선정간담회 개최 * 사업 수행기간: 6개월
↓		
중간모니터링 (7~8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행사항 파악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-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석
↓		
결과보고서 제출 (10월~11월)	수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(증빙포함) 제출
↓		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(11월)	전담기관/ 수행기관 (평가위원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•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**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****□ 신청 시 유의사항**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과제 수행 기업은 전담기관에 승인받은 항목에 한하여 자금 집행 가능

□ 선정자의 의무사항

-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전담기관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(사전 진단 등)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
-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사업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6**신청 문의****□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**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전담 기관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	최일진 책임연구원	02-3460-0355	iljin@kimst.re.kr

참고 1

창업 인정 기준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	폐업 3년 초과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	창업아님	
	조직변경	동종업종 유지	창업아님	
		이종업종 변경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동일인인 경우	창업아님
			발행주식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
* 업종은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업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참고 2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65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를 기준으로 함